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의료 폐기물, 시스템을 바꾸자.

- 일 시 : 2021년 9월 28일 10시
- 참석의원 : 국회의원 홍익표(고령칠곡 협력의원)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양이원영(무소속)
- 발 제 : 정석원 아림환경 반대 주민대책위원장  
권용환 산대 저수지 경관추진위원장
- 참여패널 : 이경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 교수  
계대욱 기후탈핵 에너지 국장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
- 취 지 : 본 토론회는 의료폐기물 소각이 지나친 한 지역(경북지역)의 편중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함과 아울러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국토균형 발전의 진정한 의미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발전이라는 의미를 살려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진행시간 : 90분
- 진행방법 : zoom, 이수진 의원 유튜브 (노동이수진TV)

○ **진행** : 이 강 회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p>참가자 소개 및 대표 인사 (5분)</p>	<p>국회의원 홍익표 (칠곡고령지역위원회 협력의원)          국회의원 이수진 (비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양의원영 (무소속)          고령군성주군칠곡군지역위원회 위원장 장세호          경주시지역위원장 정다은</p>
<p>발제1 (15분)</p> <p>발제2 (15분)</p>	<p>정석원 &lt;아름환경 반대 주민대책위원장&gt;          - (주)아름환경을 통해서 본 의료폐기물 처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 <p>권용환 &lt;산대 저수지 경관추진위원장&gt;          - ESG 경주를 통해서 본 의료폐기물 원거리 이송과 지역 집중 현상의 문제점</p>
<p>토론 및 질의 응답 (50분)</p>	<p>&lt;토론1&gt; 이경무 &lt;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 교수&gt;</p> <p>&lt;토론2&gt; 계대옥 &lt;기후탈핵 에너지 국장&gt;</p> <p>&lt;토론3&gt; 문제원 &lt;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gt;</p>

\*\*\* 첨부 자료 \*\*\*

- 발제 1. (주)아름환경을 통해서 본 의료폐기물 처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제 2. ESG경주를 통해서 본 의료폐기물 원거리 이송과 지역집중 현상의 문제점
- 두류공단 행정처분현황
  - 2019년 ESG 증설을 위한 공청회 자료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기관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 허용 관련 기사

## 인사말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안녕하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존경하는 홍익표 의원님, 양이원영 의원님 그리고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경주지역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아주신 이강희 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전문가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건의료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오래전부터 의료폐기물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해왔습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위험성이 다른 폐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운반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폐기물 중 가장 엄격하게 다뤄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로 인해 의료폐기물 역시 증가하면서 이를 처리하는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역시 큰 문제입니다. 그중 경주를 포함한 경북지역은 의료폐기물 처리 부담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의료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는 방식은 불필요한 환경 피해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발생지 책임원칙을 확립해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폐기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가 허용되면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공간적 제약으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형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편 최근 의료폐기물이 증가하면서 불법 방치 사례 역시 늘었고, 대기오염물질 누출, 폐수 유출 등에 대한 위험성이 커져 지역주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미미하거나 조치가 늦어져 실효성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민관 전문

가들이 한 데 모여 대안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방안들이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제안해주신 내용들이 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양이원영 국회의원(무소속)

의료폐기물 관련 국회토론회 인사말 보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먼저 칠곡고령지역 협력의원으로 이 토론회에 함께 해주시는 홍익표 의원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현안을 청취하고자 앞장서주시는 이수진(비례) 의원님, 이 토론회 주최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 정다운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번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는 여러 형태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경주지역에 방문했을 때 의료폐기물에 대한 지역 현안도 알려주시고 국회 토론회도 제안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료폐기물처리시스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가 성사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며 온라인을 통해 접속하시는 시민분들과 적극적인 토론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의료폐기물 이동과 소각이 지나치게 한 지역으로 편중화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분들의 불안과 불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폐기물 양이 급증하면서 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은 더 시급해 보입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시스템을 문제점을 같이 찾고 분석하고 최근 대형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의 설치되는 것을 보며 멸균분쇄시설 설치에 대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그리고 의료폐기물 이동과 처리와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저는 지역주민분들의 불안이 감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적극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진행을 맡아 주신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 이강희 여성위원장님과 현장에서 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정석원 아림환경 반대 주민대책위원장님, 권용한 산대 저수지 경관 추진 위원장님 발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에 기꺼이 참여해주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 이경무 교수님, 뉴스타파 김장민 기자님, 대구환경운동연합 기후탈핵 에너지국 계대욱 국장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문제원 과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한번 오늘 이 뜻 깊은 자리 좋은 의견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 9. 28.

국회의원 양이원영

## (주)아림환경을 통해서 본 의료폐기물 처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 석 원

아림환경반대주민대책위원장

### I. 서론

- 현재의 탄소 중립, 녹색경제 등은 전 인류에게 닥친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에 근거해 있음. 특히, 코로나 19의 인류에 대한 위협은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 전 인류의 마음속에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극대화됨.
- 2019년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의료폐기물이 민가와 근접한 전국 곳곳에 불법 방치되면서 지역민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며 일며 ‘의료폐기물 사태’가 발생함.
- 각종 방송과 언론에서 300여 회 이상 보도되었고, 국무회의에서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고<sup>1)</sup>, 국정감사에서 그 심각성을 심각하게 지적한 바 있음<sup>2)</sup>.
- 사태의 심각성과 달리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음. 그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대안 찾기의 기회를 갖고자 함.

1) 2019년 6월 18일 24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의 특별한 대처를 요하는 지시사항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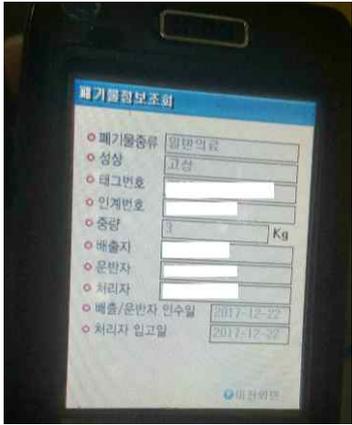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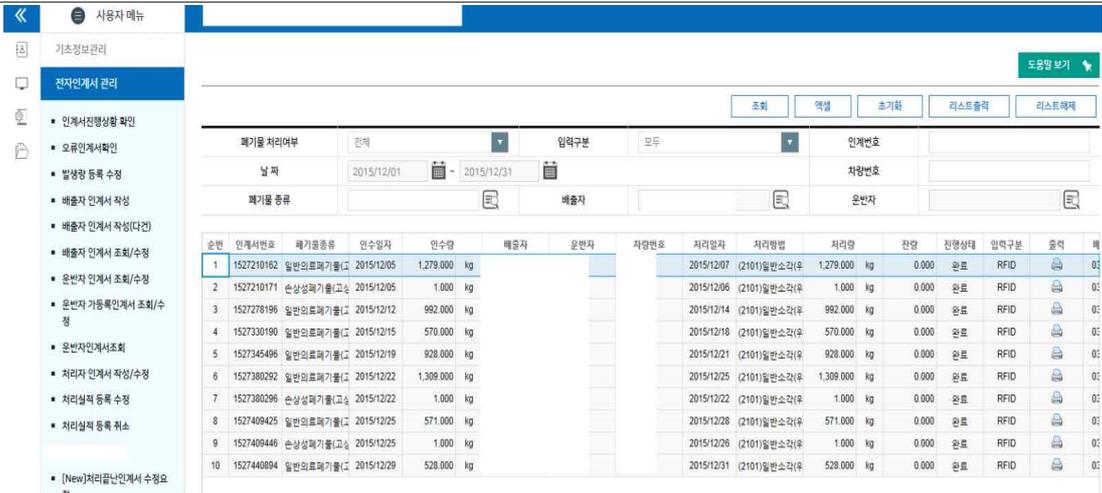
2) 2019년 10월 10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아림환경에 대한 심각성과 대구지방호나경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제기함.

## II. 의료폐기물 사태의 개요

### 1. 의료폐기물의 처리과정

- 의료폐기물은 현재 국내 **폐기물의 관리 대상 중 가장 높은 등급의 관리대상**으로서 ① 의료폐기물전용용기 사용 의무화, ② 전자태그부착 의무화, ③ RFID시스템, ④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 System)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표 1>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 관한 각 자료

의료폐기물처리과정에 관한 각 자료																																																																																																																																																																																		
① 의료폐기물전용용기	②전자태그(tag)	③무선주파수 인식방법 (RFID)																																																																																																																																																																																
																																																																																																																																																																																		
④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 System)																																																																																																																																																																																		
 <table border="1"> <thead> <tr> <th>순번</th> <th>인계번호</th> <th>폐기물종류</th> <th>인수일자</th> <th>인수량</th> <th>배출자</th> <th>운반자</th> <th>차량번호</th> <th>처리일자</th> <th>처리방법</th> <th>처리량</th> <th>잔량</th> <th>진행상태</th> <th>입력구분</th> <th>출력</th> <th>비</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527210162</td> <td>일반의료폐기물(고)</td> <td>2015/12/05</td> <td>1,279.000 kg</td> <td></td> <td></td> <td></td> <td>2015/12/07</td> <td>(2101)일반소각(우)</td> <td>1,279.000 kg</td> <td>0.000</td> <td>완료</td> <td>RFID</td> <td></td> <td>0%</td> </tr> <tr> <td>2</td> <td>1527210171</td> <td>순상성폐기물(고)</td> <td>2015/12/05</td> <td>1.000 kg</td> <td></td> <td></td> <td></td> <td>2015/12/06</td> <td>(2101)일반소각(우)</td> <td>1.000 kg</td> <td>0.000</td> <td>완료</td> <td>RFID</td> <td></td> <td>0%</td> </tr> <tr> <td>3</td> <td>1527278196</td> <td>일반의료폐기물(고)</td> <td>2015/12/12</td> <td>992.000 kg</td> <td></td> <td></td> <td></td> <td>2015/12/14</td> <td>(2101)일반소각(우)</td> <td>992.000 kg</td> <td>0.000</td> <td>완료</td> <td>RFID</td> <td></td> <td>0%</td> </tr> <tr> <td>4</td> <td>1527330190</td> <td>일반의료폐기물(고)</td> <td>2015/12/15</td> <td>570.000 kg</td> <td></td> <td></td> <td></td> <td>2015/12/18</td> <td>(2101)일반소각(우)</td> <td>570.000 kg</td> <td>0.000</td> <td>완료</td> <td>RFID</td> <td></td> <td>0%</td> </tr> <tr> <td>5</td> <td>1527345496</td> <td>일반의료폐기물(고)</td> <td>2015/12/19</td> <td>928.000 kg</td> <td></td> <td></td> <td></td> <td>2015/12/21</td> <td>(2101)일반소각(우)</td> <td>928.000 kg</td> <td>0.000</td> <td>완료</td> <td>RFID</td> <td></td> <td>0%</td> </tr> <tr> <td>6</td> <td>1527380292</td> <td>일반의료폐기물(고)</td> <td>2015/12/22</td> <td>1,309.000 kg</td> <td></td> <td></td> <td></td> <td>2015/12/25</td> <td>(2101)일반소각(우)</td> <td>1,309.000 kg</td> <td>0.000</td> <td>완료</td> <td>RFID</td> <td></td> <td>0%</td> </tr> <tr> <td>7</td> <td>1527380296</td> <td>순상성폐기물(고)</td> <td>2015/12/22</td> <td>1.000 kg</td> <td></td> <td></td> <td></td> <td>2015/12/22</td> <td>(2101)일반소각(우)</td> <td>1.000 kg</td> <td>0.000</td> <td>완료</td> <td>RFID</td> <td></td> <td>0%</td> </tr> <tr> <td>8</td> <td>1527409425</td> <td>일반의료폐기물(고)</td> <td>2015/12/25</td> <td>571.000 kg</td> <td></td> <td></td> <td></td> <td>2015/12/28</td> <td>(2101)일반소각(우)</td> <td>571.000 kg</td> <td>0.000</td> <td>완료</td> <td>RFID</td> <td></td> <td>0%</td> </tr> <tr> <td>9</td> <td>1527409446</td> <td>순상성폐기물(고)</td> <td>2015/12/25</td> <td>1.000 kg</td> <td></td> <td></td> <td></td> <td>2015/12/26</td> <td>(2101)일반소각(우)</td> <td>1.000 kg</td> <td>0.000</td> <td>완료</td> <td>RFID</td> <td></td> <td>0%</td> </tr> <tr> <td>10</td> <td>1527440894</td> <td>일반의료폐기물(고)</td> <td>2015/12/29</td> <td>528.000 kg</td> <td></td> <td></td> <td></td> <td>2015/12/31</td> <td>(2101)일반소각(우)</td> <td>528.000 kg</td> <td>0.000</td> <td>완료</td> <td>RFID</td> <td></td> <td>0%</td> </tr> </tbody> </table>			순번	인계번호	폐기물종류	인수일자	인수량	배출자	운반자	차량번호	처리일자	처리방법	처리량	잔량	진행상태	입력구분	출력	비	1	1527210162	일반의료폐기물(고)	2015/12/05	1,279.000 kg				2015/12/07	(2101)일반소각(우)	1,279.000 kg	0.000	완료	RFID		0%	2	1527210171	순상성폐기물(고)	2015/12/05	1.000 kg				2015/12/06	(2101)일반소각(우)	1.000 kg	0.000	완료	RFID		0%	3	1527278196	일반의료폐기물(고)	2015/12/12	992.000 kg				2015/12/14	(2101)일반소각(우)	992.000 kg	0.000	완료	RFID		0%	4	1527330190	일반의료폐기물(고)	2015/12/15	570.000 kg				2015/12/18	(2101)일반소각(우)	570.000 kg	0.000	완료	RFID		0%	5	1527345496	일반의료폐기물(고)	2015/12/19	928.000 kg				2015/12/21	(2101)일반소각(우)	928.000 kg	0.000	완료	RFID		0%	6	1527380292	일반의료폐기물(고)	2015/12/22	1,309.000 kg				2015/12/25	(2101)일반소각(우)	1,309.000 kg	0.000	완료	RFID		0%	7	1527380296	순상성폐기물(고)	2015/12/22	1.000 kg				2015/12/22	(2101)일반소각(우)	1.000 kg	0.000	완료	RFID		0%	8	1527409425	일반의료폐기물(고)	2015/12/25	571.000 kg				2015/12/28	(2101)일반소각(우)	571.000 kg	0.000	완료	RFID		0%	9	1527409446	순상성폐기물(고)	2015/12/25	1.000 kg				2015/12/26	(2101)일반소각(우)	1.000 kg	0.000	완료	RFID		0%	10	1527440894	일반의료폐기물(고)	2015/12/29	528.000 kg				2015/12/31	(2101)일반소각(우)	528.000 kg	0.000	완료	RFID		0%
순번	인계번호	폐기물종류	인수일자	인수량	배출자	운반자	차량번호	처리일자	처리방법	처리량	잔량	진행상태	입력구분	출력	비																																																																																																																																																																			
1	1527210162	일반의료폐기물(고)	2015/12/05	1,279.000 kg				2015/12/07	(2101)일반소각(우)	1,279.000 kg	0.000	완료	RFID		0%																																																																																																																																																																			
2	1527210171	순상성폐기물(고)	2015/12/05	1.000 kg				2015/12/06	(2101)일반소각(우)	1.000 kg	0.000	완료	RFID		0%																																																																																																																																																																			
3	1527278196	일반의료폐기물(고)	2015/12/12	992.000 kg				2015/12/14	(2101)일반소각(우)	992.000 kg	0.000	완료	RFID		0%																																																																																																																																																																			
4	1527330190	일반의료폐기물(고)	2015/12/15	570.000 kg				2015/12/18	(2101)일반소각(우)	570.000 kg	0.000	완료	RFID		0%																																																																																																																																																																			
5	1527345496	일반의료폐기물(고)	2015/12/19	928.000 kg				2015/12/21	(2101)일반소각(우)	928.000 kg	0.000	완료	RFID		0%																																																																																																																																																																			
6	1527380292	일반의료폐기물(고)	2015/12/22	1,309.000 kg				2015/12/25	(2101)일반소각(우)	1,309.000 kg	0.000	완료	RFID		0%																																																																																																																																																																			
7	1527380296	순상성폐기물(고)	2015/12/22	1.000 kg				2015/12/22	(2101)일반소각(우)	1.000 kg	0.000	완료	RFID		0%																																																																																																																																																																			
8	1527409425	일반의료폐기물(고)	2015/12/25	571.000 kg				2015/12/28	(2101)일반소각(우)	571.000 kg	0.000	완료	RFID		0%																																																																																																																																																																			
9	1527409446	순상성폐기물(고)	2015/12/25	1.000 kg				2015/12/26	(2101)일반소각(우)	1.000 kg	0.000	완료	RFID		0%																																																																																																																																																																			
10	1527440894	일반의료폐기물(고)	2015/12/29	528.000 kg				2015/12/31	(2101)일반소각(우)	528.000 kg	0.000	완료	RFID		0%																																																																																																																																																																			

-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의료폐기물’만의 RFID시스템(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활용하여 ①의료폐기물전용용기마다 ②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배출업소에서부터 태그번호와 인계번호를 생성한 후 수거·운반 과정과 처리과정에 이르기까지 ③일련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배출자 및 운반자, 처리자, 인수일과 처리자 입고일까지 실시간으로 스캔하여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전송하고 이를 ④의료폐기물 전용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므로 폐기물의 무분별한 방치,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됨.
- 이러한 관리체계가 존재함으로써 불법방치의료폐기물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각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마다 부착되어 있는 전자태그를 스캔하여 해당 의료폐기물이 언제 어떠한 배출업소에서 배출하여 이를 어떠한 수거·운반업체가 언제 수거하여 언제 어떠한 처리업체로 운반하였는지 등의 일련의 과정을 역추적할 수 있음.<sup>3)</sup>

## 2. (주)아림환경의 폐기물관리법 위반내역

- (주)아림환경은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에 소재한 의료폐기물의 소각업체로 2019년 3월부터 고령군, 대구시, 부산시, 김해시, 문경시, 통영시, 함안군 등 전국에 불법창고를 운영하며 의료폐기물을 불법방치하여 주민단체에 적발되어 대구지방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고발조치됨.

<표 2> 주식회사 아림환경의 불법폐기물 방치 내역

연번	적발일	보관장소	운반업체	인지방법
1	2018. 6	경상북도 고령군	(주)세화산업	주민신고
2	19. 04. 01	고령 다산면 송곡리 창고	(주)세화산업	주민신고

3) 실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사태 발생 시에도 의료폐기물의 처리과정을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각 관할 환경처에서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하며 유연하고 엄격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어 국가 감염병 사태 발발 당시 의료폐기물로 인한 2차, 3차 감염병 전염의 위험성을 사전 차단할 수 있었음.

3	19. 04. 11	고령 성산면 사부리 창고	(유)금호메디	주민신고
4	19. 04. 26	김해 주촌면 내삼리 창고	(주)비엠에이크린	주민신고
5	19. 05. 01	고령 성산면 오곡리 창고	(주)세화산업	자진신고
6	19. 05. 20	대구 논공읍 노이리 창고	(주)세명유니온	주민신고
7	19. 05. 27	부산 중구 고관로 창고	(주)비엠에이크린	주민신고
8	19. 06. 03	통영 용남면 화산리 창고	소망위생개발	주민신고
9	19. 06. 03	김해 주촌면 선지리 창고	부경환경	자진신고
10	19. 06. 03	김해 주촌면 명덕리 창고	부경환경	자진신고
11	19. 06. 05	문경 공평동 창고	제일클린	주민신고
12	19. 06. 07	상주 함창읍 대조리 창고	제일클린	환경청
13	19. 06. 07	구미 금전동 창고	E-라이프산업사	환경청
14	19. 06. 07	김천 어모면 남산리 창고	E-라이프산업사	환경청
15	19. 06. 07	김천 양천동 창고	E-라이프산업사	환경청
16	19. 08. 31	김해 주촌면 덕암리 창고	부경환경	자진신고
17	19. 08. 31	함안 칠서면 유성로 창고	대양개발	주민신고

- 의료폐기물이 전국 각지 17여곳의 불법창고에 수십톤에서 수백톤까지 1년이 상 장기간 방치됨.
- 감염 위험이 있는 격리폐기물이 민가와 가까운 불법창고에 방치되면서 주민 들을 큰 위험에 빠뜨림.



대구시 논공읍 노이리 불법창고



통영시 용남면 화산리 노지방치 전경

- (주)아림환경은 의료폐기물 불법방치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019년 9 월 16일 **영업정지 10개월의 행정처분**을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음
- 이러한 일명 ‘의료폐기물 사태’는 모두 (주)아림환경이 소각업체로 문제의 중 심에 있음. 이 업체는 2019년 이전에도 폐기물관리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업체임.

<표 3> (주)아림환경의 2014~2018년까지 5년간 행정처분 내역

위반법령	위반일자	위반내용	행정처분명
물환경보전법 위반	2014.07.02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사용중지
	2016.12.19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조업정지
	2016.12.19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2018.5.16	운영일지 거짓작성	경고
TMS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014.12.29	CO 배출허용기준초과	개선명령
	2015.1.16~21	CO 배출허용기준초과	조업정지
	2016.4.21	CO 배출허용기준초과	개선명령
	2017.10.7	Nox(질소산화물)배출허용기준초과	개선명령
	2018.6.29	HCl(염산)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현장지도 점검 행정처분	2015.6.11	영업정지1개월, 과태료	
	2016.12.28	경고, 과태료	
	2017.3.29	과태료	

- 표에서 보듯이 (주)아림환경은 소각로에서 나오는 심각한 오염폐수를 무단배출하였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염산 등의 유해 가스를 과다배출하는 등 지역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위협에 빠뜨려 왔음.
- 의료폐기물 불법방치로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영업정지 10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2020년 3월, 보관창고의 범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음.
- (주)아림환경은 상습적,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함.

### 3. '의료폐기물 사태' 처리의 문제점

#### 가. 관계법령

##### 폐기물 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절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별표 21.

#### **행정처분기준** (제83조제1항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6)의 경우에는 2]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1차	2차	3차	4차
13)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				

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법 제25조제9항제3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 나. 영업정지 10개월 행정처분의 부적절성

- (주)아림환경은 자신의 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영업 상 이익만을 도모하여 적정한 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한 수준의 많은 의료폐기물을 의도적으로 수탁받아, 주식회사 아림환경 소재지 내 허가받은 보관창고의 보관물량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이를 보관할 수조차 없게 되자 아래 표1)와 같이 2018년, 2019년도에 총 17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에 의료폐기물을 불법방치하여 영업정지 10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음.
- 2차 적발 건부터 (주)아림환경의 일련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어떠한 처분도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2019. 9. 16. 결국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주) 아림환경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환경부 시행령이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0개월의 처분을 함.
-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의 부당함에 대한 대구지방법환경청의 답변 내용 (2019년 10. 2 대구지방법환경청과 주민면담에서)

- **영업정지 9개월인 이유는?** 2019년 4월 주식회사 아림환경 자체 내에 불법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에 대한 단속으로 1개월+ 불법보관과 관련된 수거운반업체가 8개이므로 각 창고의 숫자나 내용과는 상관없이 각 1개월씩 8개월 합계 9개월

- 4월 1일 1차 발견 이후 6개월 동안 10차례의 불법보관 발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는? 행정처분을 내려서 영업이 중단되면 의료폐기물 대란이 일어남으로 외부의 불법방치 폐기물을 소각처리 한 후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함.

- 1차 고발 조치 이후 사부리, 달성군, 노이리, 김해시 등에서 계속하여 불법 보관 의료폐기물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모두 1차의 차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차수적용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가중처벌의 의미로 누적적용의 의미가 있는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장소에서 발견되었음에도 불법적재 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위반 사항으로 보고 1차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

### (1) 동일건의 다른 행정처분

- 2018년 6월의 건과 2019년 4월의 건은 동일한 의료폐기물의 불법보관의 건임에도 행정처분의 내용이 다름.
- 2018년 6월 최초의 적발건에 대하여 수거·운반업체인 세화산업에는 폐기물관리법 25조 1항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였고, 소각업체인 (주)아림환경에는 폐기물관리법 제 18조 3항. 무선주파수인식방법에 의한 정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의 위반건으로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림.  
즉, 최초 적발 건에 관하여 방치된 의료폐기물이 (주)아림환경이 아닌 수거·운반업체인 (주)세화산업의 것이라고 보았고, (주)아림환경은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전산상 입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만 판단하여 (주)아림환경에게는 폐기물 불법방치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음.

#### - 처분의 차이점

구분	(주)아림환경		수거·운반업체	
	처분내용	근거법령	처분내용	근거법령
2018년 적발 건에 대한 처분	과태료 200만원	폐기물관리법	영업정지 1개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제25조 제9항 제1호
2019년 16회 적발 건에 대한 처분	처분내용	근거법령	처분내용	근거법령
	영업정지 10개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없음	없음

**2) 폐기물관리법의 허가취소를 적용하지 않고 환경부 시행령을 적용하는 재량권 남용.**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각호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그에 권한을 위임 받은 대구지방환경청에 재량권이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러한 대통령령의 폐기물관리법의 법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환경부 시행령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0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림.

**3) 각기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 16회에 걸친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적발에도 불구하고 업체별로 동일하게 1회차의 1개월 영업정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

- 대구지방환경청은 불법적재 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보고 각 수거운반업체 별로 각 1개월, 총 10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림. 불법적재가 시작된 시기가 각 창고별로 차이가 있으며, 불법창고의 현장에서 확인 결과는 2차 불법창고가 고발조치 된 이후에도 다른 불법창고에서 계속적 불법적재가 지속되고 있었음. 즉, 16개의 불법창고의 불법적재기간이 각각 다르므로 이를 동일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최종 창고가 발견되고 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차수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 부당함.

**4) 적정한 시기에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6개월이 지나서 한꺼번에 1차수의**

##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함.

- 4월 1일에 2차 불법창고가 주민신고로 고발이 되고 나서 17차의 불법창고가 최종 적발되기까지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서 모든 창고가 발견되고 난 후에야 한꺼번에 동일 건으로 1차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함.
- 2차 불법창고의 고발조치 후에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환경청장과의 면담과 집회, 환경부 집회와 폐자원관리과장과의 면담 등 수차례의 집회와 면담을 통해 영업허가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음.  
통상 범위반 사실을 인지하면 관할청에서는 1내지 2주내에 해당 처분을 하기 마련인데 이 사건의 경우 관할청은 6개월 동안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음.
- 대구지방환경청은 차수산정의 누적기준은 기존의 불법행위가 발견되고 난 이후에 그 행위를 멈추지 않고 반복할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동일한 불법시기이므로 가중처벌을 위한 누적 차수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임.  
하지만 불법창고의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4월 1일 고령군의 송곡리 창고의 고발조치 이후에도 새로운 불법의료폐기물이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었음. 즉, 불법이 고발조치가 된 시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불법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지속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누적된 범법행위임.
- 2차 창고가 발견되고 즉각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다음의 불법창고의 발견시에는 차수산정에 추가되어 4차의 행정처분인 허가취소가 이루어졌을 것이나, 이를 집행하지 않고 한꺼번에 1차수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췌)아림환경이 허가취소가 되지 않음. 이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부족하다고 신규인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부당한 법집행으로 이해됨.

## 5) 처분누락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만 처분을 하였으나 (주)아림환경은 같은 법 제25조 제9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이라는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과도한 수준의 폐기물을 수탁받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나 이에 관한 처분은 다루지조차 않음.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불법행위를 행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관계 부서,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등 지도·점검의 의무가 존재하나 이행하지 않았음.

#### 4.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

##### 가. 국가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의 무력화

- 무선정보입력방식(RFID)에 의한 국가관리시스템의 처리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업체에 제대로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함.
- 국가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는 불법방치된 의료폐기물이 전량 (주)아림환경에서 소각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음에도 수거운반업체가 독자 처리한 것으로 자신들과 무관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임.
- RFID태그가 붙여지지 않고 소각되더라도 전산상의 수기입력 및 처리했다는 데에 대하여 대안이 없음.

##### 나. 관리감독의 부실

- 불법 현장에서 본 주민의 입장에서 대구지방환경청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무기력 그자체.
- 수거운반업체에서 의료폐기물 불법적치를 사전에 경고하고 대책을 수차례 공문 등의 형식으로 요구했으나 무산됨(2019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한

정에 환노위 의원 문제제기)

- 불법창고의 현장에서 내부에 불법의료폐기물이 보여도 사유지 침범이라는 이유로 진입하지 못함.
- 내부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이 대기환경호르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알고 아침부터 폐기물의 종류를 구분해서 소각함. 즉, 현장점검을 나오기 직전에 사전연락이 오고 그에 대비하여 소각기를 운영한다고 함. 또한, 소각현장에서의 불법적지에 대하여 환경청에 직접 신고 후에도 출동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 후 2주가 지난 다음 불법적지 폐기물이 완전히 소각된 후에 현장 점검을 실시함. (2020년 9월의 내용)

다. 관련법의 비현실성

- 영업정지 1개월을 과징금 2천만으로 대체하는 현실 : 1일 매출액이 수천만원 이상인 업체의 영업정지를 2천만원 과징금으로 대체를 한다면 제제의 의미가 없음.
- 불법적지에 대한 기간, 양에 상관없이 동일한 처분 : 100톤이나 1kg이나 불법보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동일하며, 불법의 기간이 하루든 1년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처분규정을 적용함. 즉, 지역주민에 미치는 악영향과는 무관하게 적용됨.

라. 지역주민의 소외

- 2020년 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허가취소를 구하는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환경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직접적 피해의 당사자 아닌 상태에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부작용이 존재한다고 할수 없다)는 사유로 각하됨.
- 대구지방환경청은 위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법적절차와 규정에 따라 모든 사안을 처리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

### Ⅲ. 개선방향

#### 1. 관련법과 관리감독권의 강화

-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법의 강화가 요구됨.
- 특히, 가장 높은 관리등급의 의료폐기물의 처리업체의 관련법의 위반에 대해서는 세분화되고 강화된 제재방안이 필요함.

#### 2. 의료폐기물처리시스템의 공공화

- 의료폐기물 불법적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영업함으로서 발생.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욕심과 폐기물 처리업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의 결여가 만든 결과임.
- 의료폐기물은 감염의 위험과 대기오염 등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 만큼 사업자의 영리목적에 맡겨둘수 있는 업종이 아님.
- 공공의료폐기물 처리시스템을 확보하여 배출가스의 상시공개 등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자체 및 주민과 소통하여 선순환시스템을 만들면 의료폐기물소각장에 대한 거부(님비 현상)은 사라질 수 있을 것.
- 각 권역 환경청 단위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총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 처리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권역별 이동의 문제도 해결 가능.

#### 3. 의료폐기물의 세분화를 통한 일반폐기물로의 소각확대

- 2019년 의료폐기물 사태의 영향으로 요양원의 기저귀가 일반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가능토록 관련법이 개선됨. 이처럼 의료폐기물의 세분화를 통한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일반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가능한 방안을 마련함.

## ESG 경주를 통해서 본 의료폐기물 원거리 이송과 지역 집중 현상의 문제점

### 1. 두류공업지역 사업체 현황 및 지리적 현황

○ 두류공업지역 사업장 현황

번호	업소명	업종	소재지 (도로명)	인허가 현황				원료	제품
				대기	수질	폐기물	비산먼지		
1	(주)항성메탈	폐기물중간재 활용업	안강읍 두류길 132	허가 5종	5종	일반		전자회로기판, 구리, 코크스	금속괴
2	(주)한일씨앤에스	비금속광물제 조	안강읍 두류길 76	4종	5종	일반	비산 먼지	수제슬래그, 결합제(사탕수 수등)	비료
3	(주)미름 경주제2공장	비금속광물분 쇄물생산업	안강읍 두류길 192	3종	5종	일반	비산 먼지	슬래그, 오톨, 석탄재, 석회석등	시멘트원료
4	(주)미름	기타비료 및질소화합물 제조	안강읍 두류길 100-14	4종	5종			수제슬래그, 결합제(사탕수 수등)	비료
5	(주)신디프2공장	석탄화학계화 합물 및 기타기초유기 화학물질제조	안강읍 사박길 19-6	4종	5종			에틸알콜, 에틸아크릿, 나트륨에트산화 물	세정제
6	(주)아리웰	폐기물중간재 활용업	안강읍 두류길 295	4종	5종	일반		유기성오니류	시멘트원료
7	(주)에코그린	비금속원료재 생업	안강읍 두류길 327	허가 5종	5종	일반		폐합성수지	폐합성수지 재생원료
8	태인	폐기물중간재 활용업	안강읍 두류길 214	3종	5종			아주까리유박, 대두 유박, 미강, 골분 등	유기질비료
9	대화산업(주)	폐기물중간재 활용업	안강읍 두류길 214	3종	5종	일반		고철, 제강슬래그, 오니류, 분진등	제강원료 시멘트원료
10	양정산업(주) 경주지점	지정및일반폐 기물처리업	안강읍 두류길 218-96	허가 4종	5종	지정, 일반		폐산, 분진, 중화제등	광물류
11	(주)삼엽화학	화공약품제조 업	안강읍 두류길 105				비산 먼지	수산화나트륨 첨가제	철 세정제

12	(주)보경아이앤씨	지정외폐기물 처리업	안강읍 두류길 257-65	5층	5층	일반		시멘트, 석회석, 석분등	시멘트혼화 제, 콘크리트혼 화제
13	(주)신디프	기타기초유기 화학물질제조 업 윤활유및그리 스제조	안강읍 두류길 249-278	3층	5층			메탈올, 에탄올 등	세정제
14	(주)안성씨앤에스	코크스및관련 제품 제조업외	안강읍 두류길 183-11	3층	5층	일반	비산 먼지	분진 (코크스,중유회 분)	가탄재
15	(주)황조두류 공단2지점	종합재활용업	안강읍 두류길 149	도관 장(1 층)	5층	지정, 일반		제강분진 등	아연
16	(주)이에스지 경주	지정폐기물중 간처리업	안강읍 두류길 178-1	도관 장(1 층)	도관 장(5 층)	지정		의료폐기물	-
17	삼우화학	비금속광물제 품제조 (아스콘채움 제)	안강읍 두류길 183-12	4층			비산 먼지	규조토, 운모, 장석등	비금속광물
18	삼성레미콘	비금속광물제 조	안강읍 두류길 35	5층	5층		비산 먼지	골재, 시멘트	레미콘
19	(주)서벽	비금속광물제 품제조업	안강읍 두류길 35	5층	5층		비산 먼지	골재, 시멘트	레미콘
20	(주)한동아스콘 경주지점	비금속광물제 품제조업 (폐기물처리 업.아스콘)	안강읍 두류길 194-22	3층	5층	일반	비산 먼지	골재, 아스팔트유	아스콘
21	남동화학(주)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제 조업	안강읍 두류리 318	허가 5층	5층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등	탈지제, 세정제, 표면처리제
22	정세환경 기술(주)	폐기물중간처 분업	안강읍 두류리 441	도관 장 (1층)	도관 장 (5층)	지정, 일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
23	(주)한동알앤씨 경주지점	합성수지및기 타플라스틱물 질제조	안강읍 두류길 194-16	5층				페아스콘, 아스팔트유	재생아스콘
24	DK메탈	중간재활용업	안강읍 두류길 219	4층	5층	지정, 일반		폐유기용제, 오니류, 재생연마제	연마재원료 (탄화규소)
25	(주)티에스케이 코퍼레이션	토양정화업	안강읍 두류길 218-64		5층			오염토양	정화토양
26	(주)클린코리아 안강공장	지정폐기물처 리업	안강읍 두류길 162	4층	5층	지정		폐유	재생(정제) 연료유, 감압정제유

27	(주)주원에너지	폐유정제업	안강읍 두류길 207	4종	5종	지정		폐유	이온정제유 / 재생연료유
28	삼승(주)	지정폐기물중 합재활용업	안강읍 두류길 218-12	5종	5종	지정		폐유	이온정제유 / 재생연료유
29	(주)태광산업	폐기물중간처 리업	안강읍 두류길 226		5종	일반		음식물폐기물	퇴비
30	에스캠텍(주)	폐기물종합재 활용업	안강읍 두류길 100-39	5종	5종	지정, 일반		오니류, 폐합성수지, 아세톤,글리콜류 등	폴리올(합 성수지원료 ) / 마그네슘실 리케이드
31	근원R.C	종합재활용업	안강읍 두류길 178-12	5종	5종	일반		광재류	비철금속원 료
32	(주)녹색환경	가공및재생플 라스틱원료생 산업	안강읍 두류길 208	5종		일반		폐합성수지	가공합성수 지
33	(주)삼보나노소재	비금속광물분 쇄물생산업	안강읍 두류길 240-14	5종				바라이트, 탈크	비금속광물
34	(주)경주테크	기타비철금속 압연,압출및연 신제품제조업	안강읍 두류길 218-20	허가 5종	허가 5종			연괴	연심
35	원광금속	비철금속정련 제조업(24219 )	안강읍 두류리 1563-23	5종	허가 5종			주석도금 황동스크랩	황동스크랩
36	(주)삼우엠티엘	부직포및펠트 제조업	안강읍 두류길 120-4	5종				방해석, 장석, 세라믹원료	부직포 및 펠트 원료
37	(주)에스피씨아이	기타기초유기 화학물질제조 업	안강읍 두류길 201	5종	5종			인텐, 다이메틸케톤 등	촉매류, 중간체
38	경안종합폐차장	폐차장업	안강읍 두류길 35			기타 수질		폐차	고철 등
39	(주)마루이엔티	지정외폐기물 처리업(38210 )	안강읍 두류길 218-58	5종	5종	일반		폐합성수지, 폐전기전자제품 류등	비철금속
40	남도캠앤텍(주)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외 1 종	안강읍 두류길 240-1					폐산, 폐알칼리	혼합 조제된 폐산,폐알 칼리
41	(주)이도이엔티	지정외폐기물 처리업	안강읍 두류길 257-65		5종	일반		유기성오니류	퇴비
42	(주)K-TECH	비금속광물분 쇄물생산업	안강읍 두류길 105	허가 5종	4종		비산 먼지	석영파우더, 규불산	정제석영
43	대봉산업(주)	토사석광업 (운수장비세 차)	안강읍 두류리 산1-12		5종		비산 먼지	토석채취	-

44	(주)강명산업사 안강지점	폐기물 중간처리업	안강읍 두류길 107	5종	5종	지정		폐유기용제, 폐유, 폐페인트	정제유기용 제, 정제연료유
45	(주)참좋은 환경	폐기물중간재 활용업 (퇴비제조)	안강읍 두류길 218-22	5종	5종	일반			미운영
46	(주)로텍	기타비용 및 질소화합물제 조업	안강읍 두류길 121-10	허가 4종	5종	일반			미운영
47	(주)아셀	중간재활용업	안강읍 두류길 100-13			일반			미운영
48	(주)녹색에너지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안강읍 두류길 206	허가 5종	5종	지정			미운영
49	(주)녹색환경유통	그외기타분류 안된 화학제품제조	안강읍 두류길 206-1	5종	5종	지정			미운영
50	(주)공진	비금속광물분 쇄물생산업 석탄제품제조	안강읍 두류길 105	4종					미운영
51	영일 cmb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제조 업	안강읍 두류길 101						미운영
52	호스켄 소재공업(주)	기초화학제품 제조	안강읍 두류길 144	허가 5종	4종	지정			미운영
53	(주)대륙이엔알	비금속류 해체 및선별업외1 종	안강읍 두류길 184						미운영
54	한신플랜트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외1종	안강읍 두류길 186						미운영
55	(주)다유	기타석유정제 물재처리업		5종	5종	일반( 사업 계획)			미운영
56	(주)포스메탈	동제련, 정련 및합금제조업	안강읍 두류길 218-50	허가 4종	5종	일반			미운영
57	(주)거창	폐기물재활용	안강읍 두류길 218-9	4종	5종	일반			미운영
58	케이엔비 환경(주)	폐기물종합재 활용업	안강읍 두류길 275	도관 장 (2종)	도관 장 (5조)	일반( 사업 계획)			미운영

○ 두류공업지역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 (2015.01~2021.05)

순번	업 소 명	소재지	행정처분	처분사유	위반일	비고
1	(주)나라이엔 씨	안강읍 두류길 107	과태료 100 경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2015.07.15	

2	(주)한일씨앤에스	안강읍 두류길 76	과태료 200 경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016.10.10	
3	(주)미름	안강읍 두류길 100-14	과태료 60 경고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016.10.20	
4	(주)주원에너지	안강읍 두류길 207	황함유량 초과연료 공급금지 및 회수조치 명령, 과태료1,000만원	황함유량 초과연료 공급	2017.02.20	
5	(주)공진	안강읍 두류길 105	경고, 과태료200만원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2017.03.15	
6	(주)신디프	안강읍 두류길 249-278	개선권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복합악취1000배(기준500배)	2017.04.18	
7	(주)주원에너지	안강읍 두류길 207	개선권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복합악취2080배(기준500배)	2017.04.18	
8	대화산업(주)	안강읍 두류길 214	경고,과태료60만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미이행	2017.04.25	
9	선일이앤알(주) 경주지점	안강읍 두류길 218-96	경고, 과태료100만원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	2017.04.25	
10	(주)신디프	안강읍 두류길 249-278	조치명령	악취개선권고 미이행 복합악취3000배(기준500배)	2017.06.07	
11	(주)클린코리아	안강읍 두류길 162	개선권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복합악취669배(기준500배)	2017.06.07	
12	(주)로텍	안강읍 두류길 121	개선권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복합악취1000배(기준500배)	2017.06.29	
13	(주)안성씨앤에스	안강읍 두류길 183-11	황함유량 초과연료 사용금지 명령, 과태료500만원	황함유량 0.3%초과연료 사용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제3항)	2017.2.16	
14	(주)에코그린	안강읍 두류리 676-1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먼지:92.6,기준50)	2017.9.19	
15	(주)신디프	안강읍 두류길 249-278	개선권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복합악취10000배(기준500배)	2018.03.13	
16	서정농산	안강읍 두류길 263	고발, 사용중지명령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2018.03.19	
17	대화산업(주)	안강읍 두류리 420-1	과태료 100, 경고	대기 운영기록부 미작성	2018.04.05	
18	(주)신디프	안강읍 두류길 249-278	조치명령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복합악취3000배(기준500배)	2018.10.10	
19	(주)한일씨앤에스	안강읍 두류길 76	개선권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복합악취669(기준500배)	2018.10.10	
20	(주)로텍	안강읍 두류리 912	고발, 조업정지10일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019.04.24	
21	(주)태광산업	안강읍 두류리 492-1	개선권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복합악취부지경계20배(기준15배)	2019.04.24	
22	(주)신디프	안강읍 두류길 249-278	개선권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복합악취1000배(기준500배)	2019.06.04	

23	(주)에코그린	안강읍 두류길 327	고발, 사용중지명령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미이행	2019.08.22	
24	(주)에코그린	안강읍 두류길 327	개선권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복합악취1392배(기준500배)	2019.08.22	
25	(주)아리월	안강읍 두류리 697	개선권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복합악취부지경계100배(기준1 5배)	2019.10.30	
26	(주)미름	안강읍 두류리 331-1	개선권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복합악취1,000배(기준500배)	2019.11.21	
27	(주)에코그린	안강읍 두류길 327	조치명령	악취개선권고 미이행 복합악취2080배(기준500배)	2019.11.28	
28	(주)미름	안강읍 두류리 331-1	조치명령	악취개선권고 미이행 복합악취1442배(기준500배)	2020.01.21	
29	태인	안강읍 두류길 295	개선권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복합악취1442배(기준500배)	2020.01.21	
30	태인	안강읍 두류길 295	조치명령	악취개선권고 미이행 복합악취2080배(기준500배)	2020.04.27	
31	(주)미름	안강읍 두류리 331-1	개선권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복합악취1,000배(기준500배)	2020.05.19	
32	(주)항성메탈	안강읍 두류길 132	과태료200, 경고	대기방지시설부식, 마모 방치	2020.05.20	
33	(주)강명산업 사 안강지점	안강읍 두류길 107	조업정지10일, 고발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020.05.20	
34	(주)태광산업	안강읍 두류길 226	개선권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복합악취10,000배(기준500배)	2020.05.20	
35	(주)신디프 2공장	안강읍 사박길 19-6	개선권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복합악취10000배(기준500배)	2020.09.10	
36	(주)한일씨엔 에스	안강읍 두류길 76	조업정지 10일 고발	대기배출시설 비정상운영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 제1호)	2021.01.19	
37	태인	안강읍 두류길 297	과태료 60만원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2021.01.19	
38	(주)아리월	안강읍 두류길 275	개선권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복합악취669배(기준500배)	2021.03.16	
39	(주)신디프 2공장	안강읍 두류길 310	조치명령	악취개선권고 미이행 복합악취1,442배(기준500배)	2021.04.08	
40	남동화학(주)	안강읍 두류길 110	고발, 경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2021.04.14	
41	(주)아리월	안강읍 두류길 275	개선권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복합악취669배(기준500배)	2021.03.16	
42	(주)태광산업	안강읍 두류길 226	개선권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복합악취3,107배(기준500배)	2021.05.17	
43	(주)미름	안강읍 두류리 331-1	개선권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1복합악취1,000배(기준500배) #1복합악취4,481배(기준500배)	2020.05.24	

## 2. 전국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처리 현황(2020. 09)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용량(톤/시)	용량(톤/일)	비고
	합 계			613.3	
1	(주)ESG 경주	경북 경주	4.0	96	
2	(주)스테리사이클코리아	경기 용인	3.4	81.6	
3	(주)ESG	충북 진천	3.1	76.8	
4	창광산업(주)	충남 천안	2.5	60	
5	도서환경(주)	경기 인천	1.8	43.9	
6	(주)아림환경	경북 고령	2.3	55.2	
7	(주)ESG 경산	경북 경산	1.8	44.4	
8	(주)ESG 광주	광주	1.0	24	
9	(주)엠비덱코리아	경기 포천	1.0	24	
10	(주)이메디원	전남 장흥	2.4	58.8	
11	(주)디디에스	충남 논산	0.5	9.8	
12	엔씨메디(주)	부산 기장	0.5	9.8	
13	(주)경서	경남 진주	0.2	5	
14	(주)VLI에너지	운산 울주	1.0	24	휴업중

- ESG 경주 1일 96ton 소각. 실제 소각량 110ton 이상으로 전국 20%
- ESG 4개 사업장(경주,진천,경산,광주)의 소각량 전국 36%
- 경북 3개업체 195.6ton 전국 31.8ton

## 3. ESG 경주 증설 시도

- 2018년 환경 영향평가 초안제출. (1일 96ton 에서 120ton 증설)
- 2019년 공청회 개최  
안강 주민들 반대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제출 보류
- 2021년 다시 증설 시도(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 4. 의료폐기물 원거리 이송에 따른 과도한 이송비용과 소각 비용

- 이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5. 지역 집중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

- 1) 위험물의 지역 집중으로 인한 불안함.
- 2) 지나친 원거리 이송으로 인한 병원의 비용부담은 결국 소비자인 환자들의 부담으로 연결 됨.
- 3) 원거리 이송에 따른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에 위험 부담 가중.
- 4)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없이 국가균형 발전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폐기물은 배출 지역 책임이 강화되어야 환경정의에 부합함.

## 병원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

🕒 2020.09.28 10:12:39



크게보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월 25일부 시행



그동안 학교구역 근방에 금지됐던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다시 허용됨에 따라 의료폐기물 적체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이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구역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200미터 범위까지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하여 이 범위내에는 폐기물처리 행위 및 시설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왔다.

9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에서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중간처분시설로서 기계적 처분시설중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의료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소각시설 등 처리시설 부족으로 비롯됐던 의료폐기물 적체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료기관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 및 허용을 건의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교육환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편집부 기자 [news@mton.co.kr](mailto:news@mt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